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0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례를 직접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

에 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

Ⅲ. 검토의견

1.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0조(장례비) ① ----- -----장례를 지낸 유족----- -----장례비(葬禮費)-----.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례비----- -----장례-----장례비-----.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 -----장례비----- ----- ----- ----- ----- ----- ----- ----- -----

책임을 면한다.

② (생략)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② (현행과 같음)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장제비

4.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장제비

제170조(벌칙) -----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장제비----- -----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현행법령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¹⁾에게 장제비를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족순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선원법 시행령」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제30조(유족의 순위) ①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전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전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전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1) 「선원법」 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장제비의 지급 목적은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이와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²⁾」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³⁾」에서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유사입법례 비교]

구분		선원재해보험	어선원보험	산재보험
근거법률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 례 비	명칭	장제비	장례비	장례비
	지급 대상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장례를 지낸 유족	장례를 지낸 유족
	금액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평균임금의 120일분 ※ 유족이 아닌 경우 실제 비용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개정할 경우 유족의 범위 자체가 불명확해지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장례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한편, 개정안의 내용 중 ‘장제’를 ‘장례’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

-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실례에 따라 ‘장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시행일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 및 재해보험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선원노련은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유족이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해운조합은 분쟁으로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19